KOSHA GUIDE

C - 79 - 2015

- (가) 수직보호망은 와이어 케이블을 슬래브 바닥 위치, 높이 50cm 위치, 높이 150cm 위치, 천정 위치에 각각 설치하여 여기에 망을 긴결한다.
- (나) 수직보호망 긴결용 와이어 케이블은 부식이 없어야 하며, 충격력 90kgf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.

6. 공사단계

6.1 공통사항

- (1) 공사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위험성평가는 1단계(종합시공계획서)에는 착공 전 전체 공종에 대하여 공법 및 투입장비 등에 관하여 실시하고, 2단계(공종별 시공계획서)에는 공종별로 해당 공종 시작 전에 실시하고, 3단계(단위공정 시공계획서)는 공정별로 단위공사 투입 전에 실시하여, 거시적·미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초고층 건축물공사에 사용되는 특수가설장비(ACS 폼, CPB, 타워크레인, 곤돌라, 리프트 등)에 대해서는 제작사 또는 공급자가 작성한 구조검토서와 매뉴얼을 제공받아 현장의 작업조건에 적합한 구조 안전성 확보여부에 관하여 책임있는 기술자가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 이 때책임있는 기술자란 시공사 또는 감리사(감독관 포함)의 구조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(이하 동일함). 만약 제작사 또는 공급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(3) 특수가설장비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구조검토서에서 정한 부재의 성능을 확보한 자재인지를 검수하고 부재의 변형 또는 손상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조립을 승인하여야 한다.
- (4) 특수가설장비는 장비별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, 관리감 독자는 구조검토서 및 매뉴얼에서 정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.
- (5)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재의 인양, 장비의